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24
----------	-------

발의연월일 : 2026. 8. 10.

발 의 자 : 소병훈 · 안태준 · 박용갑
허영 · 박정 · 이춘석
서영석 · 박지원 · 권칠승
장종태 · 용혜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첩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주민 피해와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는 상류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목소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함으로써, 의사결정 구조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상생 협력이라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본연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며 정책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24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대비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초자치단체의 장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